

사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9. 17.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9. 17

다. 상 정 일 자 : 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98.9.26)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중근 민원봉사과장)

가. 제안이유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등에 관련된 사항 및 그밖의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본계획 :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연도별지역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함.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함.
- 지역정보화 본부 :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 함.
- 전산정보자료 관리 및 이용 :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및 이용, 제공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료관리 근거를 마련함.
-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 표준화와 용역개발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정보화가 추진되도록 함.
- 컴퓨터시스템 운영 :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운영,처리등에 대한 절차와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를 마련함.

○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 정보화에 따른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함.

○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추진 및 정보 이용능력 배양을 위해 정보화교육 및 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첫째, 총칙편에 본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아울러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규정을 마련하여 제반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음.

둘째, 구청장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지역주민에게 고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보수요자와 공급자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과,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지역정보화추진 협의회를 구성토록 관련규정을 마련

셋째, 지역정보화 본부의 주요기능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할수 있는 근거등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 관한규정을 명시하였음.

넷째,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추진과 컴퓨터시스템 도입 운영등에 관한사항과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정보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정보화에 대한 가치와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구민의 삶의 질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